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6. 9. 29.>

사기이용계좌등·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

거래식별번호			

피해자 정보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	금융회사등	자산종류	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및 명의인
	송금·이체·이전일시	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

피해자산 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)이 출금·이전된 계좌등 명의인 정보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	금융회사등	자산종류	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및 명의인
	송금·이체·이전일시	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

피해자산 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)이 입금·이전된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등	금융회사등		입금·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
	명의인	입금·이전일시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

※ 정보확인 요청사유 및 내용(구체적으로 적습니다)

그 밖의 사항	담당자 성명	직위	연락처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확인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회사등 대표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전자금융업자 귀하

처리절차

요청서 작성 (금융회사등) → 요청서 접수 → 정보확인 (처리기관: 전자금융업자) → 통지